서울특별시의회
제289회 임시회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20 02

2019. 9. 3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
박 기 재

□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!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박기재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2018년 10월 16일 「예술인복지법」이
일부 개정됨에 따라, 지방자치단체는
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
시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
□ 지난 5월 밝혀진 서울시 지정 인간문화재의
제자 성추행 사실 및 유죄판결은
문화예술계에 만연한 성희롱·성폭력의 민낯을 보여주는
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.

□ 이에 본 의원은
「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」에
시장이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
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
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시하며,
보다 효과적으로 예술인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최근 문화예술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
미투운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,
예술인에 대한 성희롱·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며
제대로 된 보호 장치조차 없어 성폭력 등이 은폐·축소되는
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□ 본 개정안을 통해

예술인이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
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